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서

주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 TE

/ FA

문서번호	KIRB-신20221216-031			
과제제목	ABO 부적합 간이식 환자들의 장기 예후 분석			
과제번호	KC22RISI0921	접수번호	2022-3339-0001	
책임연구자	소속	서울성모 병원/소화기내과	성명	한지원
의뢰기관	해당없음		연구비지원기관	해당없음
심사대상	신규과제			
심사일	2022년 12월 16일		승인일	2022년 12월 16일
심사결과	승인	● 심사 결과 별 유의사항 - 승인 : 신규과제의 경우 "승인"일 때 연구 개시 가능 - 시정후승인 또는 보완 :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필요		
연구승인유효기간	2023년 12월 15일	● 연구의 지속을 위하여 연구승인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지속심사 승인을 득하십시오. ● 임상연구 종료 시 승인유효기간 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심사내역				
심사 의견	▶ <심사결과> 승인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IRB에서는 본 안건의 심사 결과를 "승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승인유효기간: 2022-12-16 ~ 2023-12-15 2. 지속심사 주기: 1년			
안내 사항	▶ 안내사항 1. 연구 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을 통하여 연구기간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결과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IRB 행정간사 윤수현(02-2258-8201)/5패널			
파일명(제출자료명)		버전	첨부파일명	
계획서		1.0	20221206 계획서 1.0_ - 복사본.doc	
증례기록지		1.0	20221110 CRF 1.0.xlsx	
임상시험자 자료집(IB) 또는 근거논문		1.0	American J Transplantation - 2015 - Song - ABO Incompatible Adult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Under the.pdf	
근거논문2		1.0	Current_Status_of_ABO_incompatible_Liver.101.pdf	
데이터심의통보서		1.0	20221129-F-507 데이터심의결과통보서_ 소화기내과 한 지원.pdf	
동의면제사유서		1.0	20221206 동의면제사유서 - 복사본.docx	

- 귀하가 신청한 심사안에 대하여 본 임상연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결과 통보서는 연구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연구 문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연구자는 IRB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IRB 심사일로부터 3주 이내에 이의 사유를 기록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임상연구심사위원회는 KGCP 및 ICH-GCP 규정을 준수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

(직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직인)



연구자의 임상시험/연구 수행 시 지켜야 할 사항

1.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십시오.
2.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수행하십시오.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사항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동의서 취득시 연구대상자 동의서는 CTSC 시스템 내에서 승인유효기간이 전자 날인된 동의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십시오.
4.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대상자의 모국어로 인증된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과정을 수행할 것이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의 참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연구대상자 모집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7. 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연구대상자라도 사망, 입원,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8.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임상시험 또는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0. 승인된 연구의 지속을 위해서는 연구승인유효기간 이내에 지속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 심사신청 권장)
11. 임상시험이 종료(조기종료를 포함)된 경우, 승인만료일 이전까지 연구종료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연구 종료보고서를 IRB에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12. 연구 완료 후 임상연구 관련 문서는 관련 법률 및 기관규정에 따라 이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상세 절차는 임상시험센터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